

영남대학교 학칙

제정 1967.12.22. 교육부(문교부) 인가	개정 1993. 8.28. 교육부 인가	개정 2007.11.14. 대학평의원회
개정 1968.12.26. 교육부 인가	개정 1994. 3.17. 교육부 인가	개정 2008. 1.14. 대학평의원회
개정 1969.12.27. 교육부 인가	개정 1995. 2.22. 교육부 인가	개정 2008. 2.13. 대학평의원회
개정 1970.12.31. 교육부 인가	개정 1995. 6.20. 교육부 인가	개정 2008. 4.14. 대학평의원회
개정 1971. 4.17. 교육부 인가	개정 1996. 2.28. 교육부 인가	개정 2008. 9.10. 대학평의원회
개정 1971. 8.21. 교육부 인가	개정 1996. 8. 8. 교육부 인가	개정 2008.11.27. 대학평의원회
개정 1971.10.21. 교육부 인가	개정 1997. 2.28. 교육부 인가	개정 2008.12.17. 대학평의원회
개정 1971.12.31. 교육부 인가	개정 1998. 2.27. 교육부 인가	개정 2009. 3.25. 대학평의원회
개정 1972.12.26. 교육부 인가	개정 1998. 3.24. 교무위원회	개정 2009. 7.22. 대학평의원회
개정 1973.12.28. 교육부 인가	개정 1999. 2. 2. 교무위원회	개정 2010. 1. 6. 대학평의원회
개정 1975. 3. 8. 교육부 인가	개정 1999. 8.31. 교무위원회	개정 2010. 1.27. 대학평의원회
개정 1975. 7.25. 교육부 인가	개정 1999.10.12. 교무위원회	개정 2010.10.28. 대학평의원회
개정 1976. 3. 1. 교육부 인가	개정 2000. 2.22. 교무위원회	개정 2010.12.29. 대학평의원회
개정 1977. 3.11. 교육부 인가	개정 2000. 8.22. 교무위원회	개정 2011. 1.19. 대학평의원회
개정 1978. 1.30. 교육부 인가	개정 2001. 2. 6. 교무위원회	개정 2011. 2.24. 대학평의원회
개정 1979. 2.16. 교육부 인가	개정 2001.11.27. 교무위원회	개정 2011. 7.14. 대학평의원회
개정 1979. 3.27. 교육부 인가	개정 2002. 2.14. 교무위원회	개정 2011.10. 7. 대학평의원회
개정 1979.11.16. 교육부 인가	개정 2002. 2.25. 교무위원회	개정 2011.11.23. 대학평의원회
개정 1980. 3. 4. 교육부 인가	개정 2002. 3.19. 교무위원회	개정 2012.11.30. 대학평의원회
개정 1980. 8. 6. 교육부 인가	개정 2002. 7.16. 교무위원회	개정 2013. 1.25. 대학평의원회
개정 1981. 5.19. 교육부 인가	개정 2002. 8.27. 교무위원회	개정 2013. 7. 4. 대학평의원회
개정 1982. 9. 8. 교육부 인가	개정 2003. 1.21. 교무위원회	개정 2014. 2. 6. 대학평의원회
개정 1984. 3.16. 교육부 인가	개정 2003. 6.10. 교무위원회	개정 2014. 2.26. 대학평의원회
개정 1984. 9. 7. 교육부 인가	개정 2003.12. 9. 교무위원회	개정 2014. 6.12. 대학평의원회
개정 1985. 3.16. 교육부 인가	개정 2004. 1.27. 교무위원회	개정 2014. 9.26. 대학평의원회
개정 1985. 7. 5. 교육부 인가	개정 2004. 2.24. 교무위원회	개정 2014.12.29. 대학평의원회
개정 1986. 2.28. 교육부 인가	개정 2004. 6.22. 교무위원회	개정 2015. 2.12. 대학평의원회
개정 1986. 9. 5. 교육부 인가	개정 2005. 1.11. 교무위원회	개정 2015. 3.27. 대학평의원회
개정 1986.12.31. 교육부 인가	개정 2005. 2.23. 교무위원회	개정 2015. 9.22. 대학평의원회
개정 1987. 9. 8. 교육부 인가	개정 2005. 7.26. 교무위원회	개정 2016. 1.21. 대학평의원회
개정 1987. 9.30. 교육부 인가	개정 2005.10.11. 교무위원회	개정 2016. 5.19. 대학평의원회
개정 1987.11.17. 교육부 인가	개정 2005.12. 6. 교무위원회	개정 2017. 4.11. 대학평의원회
개정 1988. 3.17. 교육부 인가	개정 2006. 2.24. 교무위원회	개정 2017. 7.26. 대학평의원회
개정 1988.12.30. 교육부 인가	개정 2006. 9.12. 교무위원회	개정 2018. 1.18. 대학평의원회
개정 1990. 3.17. 교육부 인가	개정 2006.10.24. 교무위원회	개정 2018. 8. 9. 대학평의원회
개정 1991. 6.10. 교육부 인가	개정 2007. 1.15. 교무위원회	
개정 1991.10.23. 교육부 인가	개정 2007. 2.13. 교무위원회	
개정 1992. 2.24. 교육부 인가	개정 2007. 4.16. 대학평의원회	
개정 1992.12.26. 교육부 인가	개정 2007. 7.24. 대학평의원회	
개정 1993. 3.31. 교육부 인가	개정 2007. 9.12. 대학평의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창학정신과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조직, 학사운영,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4.>

제1조의2(창학정신) 우리 대학교는 지성의 전당으로서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교육과 생산교육을 추진함으로써 민족중흥의 새역사 창조에 기여함을 창학정신으로 삼는다.<신설 2013.7.4.>

제1조의3(교육목적) 우리 대학교는 민주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아울러 협동정신이 풍부한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을 교육목적으로 한다.<신설 2013.7.4.>

제1조의4(교육목표) 우리 대학교는 다음과 같이 교육목표를 설정한다.<신설 2013.7.4.>

1.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에 적극 봉사하며, 민족중흥의 동량이 될 지도적 인격자를 길러낸다.<신설 2013.7.4.>
2. 민족문화의 발전적 계승으로 민족의 역량을 축적하고 세계문화의 주체적 탐구로 민족의 역사를 창조하는데 이바지한다.<신설 2013.7.4.>
3. 민주교육의 이념을 바탕으로 합리적 사고와 시민정신에 투철한 도덕적 사회실현을 위한 주체적, 창조적 인간교육에 힘쓴다.<신설 2013.7.4.>
4.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통한 생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변화하는 현대사회 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량을 갖춘 인간을 길러낸다.<신설 2013.7.4.>
5. 학문과 문화의 국제적인 교류를 적극화하고, 연구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국제수준에 서의 창조적 학문활동에 이바지한다.<신설 2013.7.4.>
6.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광범한 분야에 걸쳐 전공교육과 교양 및 인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양성과 조화를 통한 인류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한다.<신설 2013.7.4.>

제2조(교육편제) ① 우리 대학교의 교육편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2.14., 2003.6.10., 2004.2.24., 2004.6.22., 2005.7.26., 2005.10.11., 2006.9.12., 2007.1.15., 2007.7.24., 2007.11.14., 2008.4.14., 2009.3.25., 2010.1.27., 2010.12.29., 2011.10.7., 2011.11.23., 2012.11.30., 2014.6.12., 2014.9.26., 2015.2.12.>

1. 대학에는 문과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기계IT대학, 정치행정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의과대학, 약학대학, 생명응용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사범대학, 디자인미술대학, 음악대학, 야간강좌개설부, 기초교육대학, 건축학부, 국제학부를 둔다.<신설 2015.2.12., 개정 2015.9.22., 2016.5.19., 2018.1.18.>
 2. 대학원에는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두고, 전문대학원에는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에는 경영대학원, 환경보건대학원,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공학대학원, 문화예술디자인대학원, 스포츠과학대학원, 임상약학대학원, 박정희새마을대학원을 둔다.<신설 2015.2.12.>
- ② 대학원의 학칙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0.2.22>
- ③ 대학에 학부 또는 학과를 둘 수 있으며, 학부에는 20이상의 전공분야를 둘 수 있다. 다

만, 기초교육대학에는 교양학부를 둘 수 있다.<개정 2008.12.17.>

제3조(학부(과)·입학정원) ① 각 대학(독립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부(과) 편성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1.11.27., 2004.6.22., 2005.10.11., 2006.9.12., 2007.7.24., 2008.9.10., 2010.1.27., 2010.12.29., 2011.11.23., 2012.11.30., 2014.2.6., 2014.9.26., 2015.9.22., 2016.5.19., 2017.7.26., 2018.8.9.>

② 계열별 또는 학과군 입학자의 전공학과는 제2학년에서, 학부 입학자의 전공분야는 제2학년 또는 3학년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조의2 삭제<2004.6.22.>

제3조의3 삭제<2011.11.23.>

제3조의4(연계(연합)전공의설치) 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의거 20이상의 학부(과)·전공이 연계(연합)전공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07.2.13.>

② 연계(연합)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신설 2007.2.13.>

제3조의5(인증제교육과정) ① 학부(과)에서는 일반교육과정과 병행하여 국내외교육과정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7.2.13.>

② 인증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부(과)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일반교육과정과 구분되는 별도의 인증제 전공명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07.2.13.>

③ 인증제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신설 2007.2.13.>

제3조의6(천마인재학부 운영) 천마인재학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8.12.17.>

제2장 부속·부설기관

제4조(부속·부설기관) ① 우리 대학교의 부속·부설기관은 영남대학교 직제규정에 따르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2.2.14., 2004.6.22., 2005.12.6., 2006.10.24., 2007.11.14., 2009.3.25., 2010.1.6.>

② 삭제<2010.1.6.>

③ 삭제<2004.6.22.>

④ 삭제<2004.6.22.>

⑤ 삭제<2004.6.22.>

⑥ 삭제<2004.6.22.>

제4조의2(부설기관) ① 삭제<2010.1.6.>

② 삭제<2010.1.6.>

③ 삭제<2010.1.6.>

④ 삭제<2010.1.6.>

제4조의3(대학 및 대학원 부속시설) ① 대학 및 대학원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속시설을 둔다.<신설 2004.6.22, 개정 2005.12.6.>

1. 삭제<2017.7.26.>

2. 약학대학 : 부속실습약국, 부속약초원

3. 생명응용과학대학 : 부속농장, 부속연습림, 부속식품가공공장<개정 2008.12.17.,

2016.5.19.>

4. 삭제<2008.12.17.>
5. 삭제<2008.12.17.>
6. 삭제<2012.11.30.>
7. 사범대학 : 부설교육연수원<개정 2008.11.27., 2013.1.25>
8. 의과대학 : 부속의학도서관, 부속학생생활관, 부속학생상담실<신설 2010.10.28.>
9. 자연과학대학 : 부속자연박물관<신설 2016.1.21., 개정 2016.5.19.>

② 제1항의 부속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4.6.22>

제4조의4(특별사업기구) 우리 대학교의 정책업무 수행 및 각종 특성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4.6.22.>

제3장 수업연한·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재학연한) ① 우리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은 5년으로 하며, 의과대학은 6년으로 하되 그 교육과정을 의예과 2년, 의학과 4년으로 한다.<개정 2001.11.27.>

② 3년이상 수학하여 조기졸업요건과 졸업사정기준에 도달한 자는 조기졸업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1.11.27., 2009.7.22.>

③ 삭제<1988.12.30.>

④ 삭제<1988.12.20.>

⑤ 삭제<2009.7.22.>

⑥ 우리 대학교의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00.2.22., 2003.6.10., 2006.9.12.>

⑦ 삭제<1996.2.28.>

제4장 학년·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6조(학년·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두 학기 이상 운영할 수 있으며, 두 학기로 운영할 경우 다음과 같이 나눈다.<개정 2018.1.18.>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2학기의 수업을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학기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③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 및 겨울학기를 둘 수 있다. 계절학기 및 겨울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7.2.13.>

제7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과별 수업일수는 학점 당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교과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1.18.>

②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주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8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방학
2. 동계방학
3. 개교기념일(12월 22일)
4. 일요일과 기타 국정공휴일

② 방학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일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이를 정한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 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5장 입학(편입학·재입학 포함)

제1절 시기

제9조(입학시기) 입학(편입학·재입학 포함)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초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제2절 자격

제10조(지원자격) ① 우리 대학교 제1학년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다만, 예·체능계 특기자는 당해 동일계열 학부(과)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0.2.22.>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3. 외국에서 12년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호 1에 해당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인정된 자.

② 의학과는 우리 대학교 의예과 수료자를 그대로 진학시키되,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와 동등한 자격자를 입학시킬 수 있다.<개정 2000.2.22.>

제11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여섯범위내에서 제3학년에만 허가할 수 있으며, 대학의 2학년과정 학점 이수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편입학의 경우에는 입학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인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3.27.>

③ 삭제<1999. 8.31.>

제11조의2(연계교육편입학) 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거 우리 대학교와 전문대학 간 연계교육협약을 맺은 경우 당해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신설 2003.1.21.>

② 연계교육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신설 2003.1.21.>

제12조(재입학) ① 퇴학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매학기 초(의학과는 매학년 초) 일정기간중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정계제적자종 개전의 정이 확실하

며 성행이 우량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속대학 교수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6.9.12.>

1. 삭제<2008.2.13.>
2. 삭제<1995.2.22.>
3. 삭제<1991.10.23.>

② 삭제<1993.8.28.>

③ 제적사유가 학사경고 또는 유급으로 인한 제적자는 그 횟수를 재입학이후 발생분과 통산하지 않으며, 제적된 날로부터 1년 경과후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06.9.12.>

제3절 절차

제13조(입학지원 서류) ① 우리 대학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 원서에 다음 서류와 소정수령료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수료증명서) 또는 동 예정증명서 기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최종 출신학교 성적증명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미 제출한 서류 또는 금액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입학시험) ① 입학지원자에 대하여는 선발고사를 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류전형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신입생 선발은 전인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출신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성적(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신체검사 결과 등 기타 증빙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특기자(체육·문학·어학·수학·과학·예능 등),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취업자, 농·어촌 학생 및 재외국민과 외국인(북한 이탈자 포함)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 특별전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의2(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신입생 선발을 위하여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5.3.27.>

- ② 제1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우리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5.3.27.>
- ③ 제1항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15.3.27.>

제15조(입학허가) ① 입학의 허가는 해당 대학장(독립학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신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다만, 입학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자의 입학 허가는 취소한다.<개정 2001.11.27.>

- ② 편입학 및 재입학은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입학은 퇴학 또는 제적되기 전에 재적하였던 동일학부(과) 또는 동일전공 분야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모집단위 또는 전공이 폐지된 경우에는 총장이 지정하는 모집단위 또는 전공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6.2.24.>

제16조(입학절차) ① 입학이 허가된 자(재입학자 제외)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정당한 이유 없이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보증인) ① 보증인은 부형 또는 기타인으로서 학생의 재학 중 학비, 기타신상에 관한 일체사항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자라야 한다.

② 삭제<1988.12.30.>

③ 삭제<1988.12.30.>

④ 삭제<1999. 8.31.>

제4절 대학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제17조의2(대학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6장 교내전부(과)

제18조(전과) ① 교내 전부(과)는 신입학생으로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2학년 초 또는 3학년 초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과대학, 약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체육학부, 사범대학 특수체육교육과, 디자인미술대학, 음악대학, 군사학과로는 전부(과)를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1.21., 2005.1.11., 2006.2.24., 2008.2.13., 2011.7.14., 2014.12.29., 2018.1.18.>

①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학부와 특수체육교육과 간, 디자인미술대학내의 학부(과) 간에는 전부(과)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08.2.13, 개정 2011.7.14., 2011.11.23., 2014.12.29.>

② 교내 전부(과) 허가인원은 학부(과)별 입학정원의 30% 이내로 총장이 결정하되, 3학년 전부(과) 허가인원은 직전학년도 2학년 전부(과) 허가 후 잔여인원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전형 신입학자는 허가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1.11., 2014.12.29., 2018.1.18.>

③ 삭제<1996.2.28.>

④ 삭제<1992.12.26.>

⑤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입학한 특기자(체육·문학·어학·수학·과학·예능 등)와 위탁생은 전부(과)할 수 없다.<개정 2018.1.18.>

⑥ 전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4.12.29.>

제19조 삭제<2014.12.29.>

제20조 삭제<2014.12.29.>

제7장 휴학·복학·퇴학 및 제적

제1절 휴학·복학

제21조(휴학절차)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3.12.9.>
② 소정의 등록기간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자는 그 학기의 납입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3년(단, 의과대학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복무를 위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2.13.,2011.11.2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 국가고시 연수원 교육, 질병, 유급, 임신·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추가로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 학업 이수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8.2.13.,2011.11.23.,2014.2.6.>

1. 삭제<2011.11.23>
2. 삭제<2014.2.6.>
3. 삭제<2014.2.6.>
4. 삭제<2014.2.6.>
5. 삭제<2014.2.6.>
6. 삭제<2011.11.23>
7. 삭제<2014.2.6.>

③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신설 2011.11.23.>

④ 휴학자는 휴학기간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은 수업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2.13.,2011.11.23.>

제22조의2 삭제<2011.11.23.>

제23조(복학)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기전 소정 기간내(의학과는 매학년 초)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정 기간 전이라도 복학할 수 있다.<개정 2000.2.22.,2014.12.29.>

제2절 퇴학·제적

제24조(퇴학) ①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서 그 사유를 구신하여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우리 대학교 학생으로서 이중학적을 가진 자는 퇴학 처분한다.

제25조(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개정 2018.1.18.>

1. 휴학한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 하지 아니한 자.<개정 2010.10.28.,2014.12.29.>
2. 삭제<2018.1.18.>

3.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개정 2014.12.29.>>
 4. 성적불량,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개정 2014.12.29.>>
 5. 재학기간 중 통산 4회의 학사경고에 해당하는 자. 다만, 최종학기 재학생으로서 졸업 또는 수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1.18.>>
 6. 삭제<2006.9.12.>>
 7.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입학자로서 관련법령으로 정한 산업체에 재직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4.12.29.>>
- ② 삭제<1988.12.30.>>
- ③ 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을 위한 구직기간(퇴직 그 다음 날부터 8개월 까지)에는 제적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2014.12.29.>>

제26조 삭제<1982.3.1.>>

제8장 등록·교과·수업·학점·졸업

제1절 등록

제27조(등록절차)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일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의 절차는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개정 2010.10.28.>>

제28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매학기 소정기일내에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일단 수강승인을 얻은 교과목은 그 개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총장의 허가 없이 변경하지 못한다.

제2절 교육과정

제29조(교과) ① 교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및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과목을 둘 수 있다.

② 교양과목의 최소이수학점은 학부(과) 또는 전공분야별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1.12.4.>>

③ 전공분야별로 학위취득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총장이 따로 정하되 35학점이상으로 한다.

제30조(교육과정 편성) ① 우리 대학교 전 교육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각 교과목은 번호로서 구분하여 표시하되 상세한 것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의2(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우리 대학교에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8.11.27.>>

제3절 수업

제31조(교과목 개설 및 운영) ① 수업시간표는 매학기 수업이 개시되기 전에 총장이 이를 정한다.

② 교과목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10.10.28.>

제32조(교과이수단위) ①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학기간 15시간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실험, 실습, 실기, 체육 및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은 1학기간 30시간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정하는 과목은 예외로 한다.

③ 삭제<1990.3.17.>

④ 삭제<1996.2.28.>

제32조의2(교원의 교수시간) 우리 대학교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주 9시간에 해당하는 강의를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 교원 담당시수 및 강의료 지급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8.11.27.,2013.7.4.>

제4절 학점

제33조(수강학점) ① 학생의 매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은 16학점 내지 24학점으로 하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은 19학점 내지 27학점으로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1.11.27.,2008.2.13.,2011.11.23.,2014.9.26.>

② 직전학기에 수강신청 기준학점 이상 수강신청한 자로서 포기과목이나 실격과목이 없이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학생과 학·석사연계과정 학생은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에서 3학점까지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의예과·의학과는 초과 신청 할 수 없다.<개정 2001.11.27.,2011.11.23.,2014.9.26.,2018.1.18.>

③ 제1학년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양과목의 학점을 완전히 취득하지 못한 자는 다음 학년에서 타과목에 우선하여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

④ 직전학기 수강신청학점이 학기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보다 미달하여 신청한 자는 3학점 범위내에서 직후학기에 한해 이월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4.9.26.>

제34조(편입학점 인정) 편입학생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5조(특별학점인정) ① 제1학년에 한하여 특별시험에 합격한 자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인정 할 수 있다.

② 재학중 총장의 허가를 받은 사회봉사활동은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실습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현장실습수업은 국내 현장 실습수업과 해외 현장실습수업으로 구분하며, 이 현장실습수업으로 취득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총 3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1.11.27.>

④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어 선수촌에 입촌한 학생은 수업권 보장 및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하여 선수촌에서 이동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우리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8.1.18.>

⑤ 특별학점취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1.11.27., 2018.1.18.>

제35조의2(대학원 및 타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 ① 재학중 총장의 허가를 받아 우리 대학교

대학원 또는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1개 학기 최대 인정 가능 학점은 학생 본인의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1.2.6., 2010.10.28.>>
- ③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의3(고교-대학 연계프로그램 학점인정) ①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우리 대학교에 입학할 경우 그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6.2.24.>

- ② 고교-대학 연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신설 2006.2.24.>

제35조의4(군복무 중 학점인정) ① 우리 대학교 재학생이 병역의무에 의한 군복무 중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8.2.13.>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점인정은 학기 당 3학점 이내로 하며 최대 12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성적은 "P/F"로 처리한다.<신설 2008.2.13., 개정 2010.10.28.>>

제36조(학년별 수료학점) 재학생의 학년별 수료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11.27., 2011.11.23.>

학년별 수료학점

학년	졸업학점	120학점		140학점		150학점		160학점		170학점	
		4년제	5년제	4년제	5년제	4년제	5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2+4)	
1 학년	30	32	35	37	40	32	—	—	—	—	
2 학년	60	65	70	75	80	64	—	—	—	—	
3 학년	90	97	105	112	120	96	42	—	—	—	
4 학년	120	130	140	150	160	128	85	—	—	—	
5 학년						160	127	—	—	—	
6 학년							170	—	—	—	

제37조(유급) ① 유급은 재학기간중 의과대학에 한하여 의학과는 학년단위로 적용하고, 의예과는 2학년만 대상으로 한다.<개정 2000.2.22.>

- ② 삭제<1988.12.30.>

- ③ 유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8조(학점의 취소) 일단 인정된 학점이라도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되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5절 졸업

제39조(졸업학점·졸업논문) ①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학부(과)에 따라 120학점에서 170학점이상으로 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 이수지침에 따로 정한다.<개정 2001.11.27., 2011.11.23.>

- ② 졸업예정자는 최종학기에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논문에 불

합격한 자와 미제출자의 논문제출 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03.12.9.>

- ③ 삭제<2018.1.18.>
- ④ 삭제<2018.1.18.>
- ⑤ 실기발표는 공개되어야 하며 공동으로도 할 수 되 개인의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
- ⑥ 졸업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40조(졸업·학위) ① 이 학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2]의 학위 및 [별표 2-1]의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02.2.14.,2004.6.22., 2005.2.23.,2005.10.11.,2006.2.24.,2006.9.12.,2007.2.13.,2007.7.24.,2008.9.10., 2008.12.17.,2010.1.27.,2010.12.29.,2011.1.19.,2011.11.23.,2014.2.6.,2014.9.26., 2015.3.27.,2015.9.22.,2016.5.19.,2017.7.26.,2018.1.18.>

- ② 소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교원자격증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등의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2001.2.6., 개정 2018.1.18.>
- ③ 재외교포 학생으로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1.12.4.,2018.1.18.>
- ④ 우리대학교와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의하여 학사학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9.7.22.>
- ⑤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협정에 의하여 복수학위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9.7.22.>
- ⑥ 제39조에 의거하여 졸업요건 중 졸업학점은 충족되었으나 졸업논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최종학년 수료자가 된다.<신설 2018.1.18.>

제41조(부전공) ① 재학중 제1전공분야 이외의 전공분야에서 소정의 부전공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부전공을 인정하여 증서에 이를 표시하고 학적부에 기록한다.

- ②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교과목중에서 21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부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42조(복수전공) ① 학과소속 학생은 소속학과의 전공분야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타 학부(과)의 전공분야를 복수로 이수할 수 있다.

- ② 학부소속 학생은 소속학부내의 1개 전공분야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소속학부의 타 전공분야, 연계(연합)전공 또는 타 학부(과) 내의 전공분야를 복수로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02.3.19.>
- ③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의과대학, 약학대학, 사범대학, 디자인미술대학, 음악대학 및 체능계열의 전공분야는 타 대학(전공·계열) 소속학생이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개정 2001.11.27.,2011.7.14.>
- ④ 복수전공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해당 학부(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요구하는 최소 전공학점과 동일하며, 복수전공 이수자에게는 하나의 학위기에 이수전공과 학위명을 모두 표시하여 수여한다.
- ⑤ 학부(과)소속 학생은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총장의 인정을 받은 전공(이하 “학생설계전공”이라 한다)분야를 복수로 이수할 수 있으며, 학생설계전공의 학위명은 제40조

제1항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정한다.<신설 2018.1.18.>

- ⑥ 복수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18.1.18.>

제42조의2(학·석사 연계과정) ① 각 학부(과)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2. 7.16.>

- ② 학·석사 연계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신설 2002.7.16.>

제42조의3(인증제) ① 제3조의 5항에 의거하여 인증제를 시행하는 학부(과) 소속 학생은 인증 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인증과정 및 일반과정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신설 2005.2.23.,2007.2.13.>

- ② 인증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칙의 졸업 기준 외에 인증제 참여 학부(과)에서 요구하는 인증 기준을 충족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신설 2005.7.26.,2006.2.24.,2007.2.13.>

- ③ 삭제<2007.2.13>

제43조(졸업·학위수여의 취소) ① 졸업생으로서 제38조의 사유로 인하여 졸업학점에 미달한 경우 졸업 및 학위수여를 취소한다.<개정 2015.2.12.>

- ② 학사학위를 받은 자가 학사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및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2.12.>

제9장 시험·성적

제1절 시험

제44조(시험) 시험은 매학기 중간 및 기말에 행한다. 그러나 필요에 의하여 임시시험을 행할 수 있다.

제45조(시험방법) 시험은 필답에 의하되, 교과목의 성질에 따라 구술, 논문 또는 과제를 등에 의할 수 있다.

제46조(성적인정) 각 교과목의 당해학기 총수업시간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10.10.28.,2018.1.18.>

제47조(추가시험·재시험)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개시 전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소속 대학장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 ②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사유를 제출하지 못한 자는 사유종료 직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③ 추가시험은 당해학기 내에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과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추가시험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중간 또는 기말시험 중 응시한 시험의 성적을 참작하여 인정점수를 줄 수 있다.<개정 2018.1.18.>

- ④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들의 적정한 성적평가를 위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1.18.>

- ⑤ 의과대학 의학과 학생의 추가시험 성적은 80점, 재시험 성적은 70점이상을 인정할 수 없다.<개정 2000.2.22.>

⑥ 삭제<1984.3.1.>

제48조 삭제<1988.12.30.>

제2절 성적

제49조(성적배정 비율)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예습, 복습,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평가비율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50조(성적평가 등급) 교과목의 성적평가 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D(60점) 이상 및 P는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18.1.18.>

등급	평점	실점수
A+	4.5	95 – 100
A	4.0	90 – 94
B+	3.5	85 – 89
B	3.0	80 – 84
C+	2.5	75 – 79
C	2.0	70 – 74
D+	1.5	65 – 69
D	1.0	60 – 64
F	0	0 – 59
P	인정	PASS

제50조의2(학사경고) 재학중 매학기 평점평균이 1.75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학사경고를 과한다. 학사경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0장 포상·징계

제51조(장학금)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가계가 곤란한 자에게는 매학기마다 장학금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급여할 수 있다.<개정 2016.5.19.>

제52조(포상)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대내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높인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9.7.22.>

제53조(징계)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소속 대학장은 징계위원회의 심의 및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이 학칙을 위반한 자.
3. 기타 학생신분에 위반된 자.

② 총장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특별히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징계처분에는 해당 학생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된다.

- ⑤ 삭제<1991.10.23.>
- ⑥ 삭제<1984.8.30.>
- ⑦ 학생징계에 관한 세부 규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1장 직제

제54조(직제) 우리 대학교의 직제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2장 교수회

제55조(교수회의 구성) ① 우리 대학교에 조교수 이상의 정년계열전임교원으로 구성한 교수회를 둔다.<개정 2002.2.14.2007.11.14.,2012.11.30.>

- ② 교수회는 전체교수회와 단과대학(독립학부와 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 교수회로 한다.<개정 2002.2.14.>
- ③ 삭제<2002.2.14.>
- ④ 삭제<2002.2.14>
- ⑤ 교수회의 운영을 위하여 의장을 비롯한 임원을 둔다.<신설 2002.2.14.>
- ⑥ 교수회에 각 대학에서 선출된 평의원으로 구성된 평의원회를 둔다.<신설 2002.2.14, 개정 2003.1.21.>

제56조(교수회의 기능)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02.2.14.,2003.1.21.>

1. 우리 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신설 2003.1.21.>
2. 우리 대학교의 학칙 중 교수회 및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신설 2003.1.21.>
3. 우리 대학교의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신설 2003.1.21.>
4. 교수회 회원과 관련된 사항<신설 2003.1.21.>
5. 기타 중요한 사항<신설 2003.1.21.>

제57조(교수회의 규정) 교수회의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체교수회 총회를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2002.2.14.>

제13장 교무위원회

제58조(교무위원회 구성) ① 우리 대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 교학부총장, 행정부총장, 의무부총장, 대학원장, 의학전문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각 대학장, 각 처장과 LINC+사업단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교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총장은 관련 교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2.2.25.,2004.6.22.,2005.7.26.,2007.11.14.,2008.4.14., 2014.2.26.,2017.7.26.>

제59조(교무위원회 소집)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0조(교무위원회 심의사항)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편제 또는 학부(과),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09.3.25.>
2.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09.3.25.>
3. 학생정원, 입학, 졸업, 수업, 시험에 관한 사항<개정 2009.3.25.>
4. 학생의 지도, 상벌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교무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3.25.>

제14장 등록금<개정 2005.1.11.>

제60조의2(등록금 정의) “등록금”이라 함은 학생이 납부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08.1.14.>

제60조의3(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학생·관련전문가 등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신설 2011.1.19.>

제61조(등록금 납부의무) 학생은 등록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1.11., 2008.1.14.>

제62조(실험·실습비 등) 삭제<2008.1.14.>

제63조(등록금 감면) ①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또는 정학으로 인하여 감면되지 않는다.<개정 2005.1.11.>

② 등록금감면에 관한 사항은 장학금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5.1.11.,2008.1.14.>

제64조(수혜비) ① 수혜비는 등록금과 동시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1.11.,2008.1.14.>

② 수혜비의 종류 및 징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8.1.14.>

제65조(등록금 및 수혜비 반환) ① 이미 납입한 등록금 및 수혜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5.1.11.,2008.1.14.,2010.10.28., 2011.7.14>

1. 법령에 따라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② 전항의 반환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반환 사유발생 시기는 재학 중인 자는 자퇴 신청일, 휴학 중인 자는 휴학 시작 일로 한다.<개정 2003.1.21.,2005.1.11.,2008.1.14., 2010.10.28.,2011.7.14>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전일까지	등록금 및 수혜비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입학생은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을 포함한다.

제15장 특별생

제1절 외국인 특별생

제66조(외국인 특별생) 외국인으로서 제5장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실력을 고사한 후 정원외에 특별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67조(증서수여) 외국인 특별생에게는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18.>

제68조(외국인 특별생의 편입) 외국인 특별생으로서 학력을 검정한 후 정규학생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규학생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

제2절 시간제등록생

제69조(시간제등록생) 일반 사회인들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 한다.

제70조(선발시기) 선발시기는 매학기 초 30일이내로 한다.

제71조(자격)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된 자로 한다.<개정 2010.10.28.>

제72조(선발인원 및 방법) ①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총 입학정원의 10%이내로 하며, 학부(과) 별 입학정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의·약학계열 및 사범계열은 지원할 수 없다.
②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73조(등록 및 수강신청) ① 시간제등록생은 소정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신청 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간제등록생은 정규학기에 학기당 12학점 이내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9.7.22.>

제74조 내지 제76조 삭제<2001.11.27.>

제3절 위탁생

제77조(위탁생) 정부 각 기관 재직자로서 그 소속 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주천에 의하여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0.10.28.>

제78조(위탁생의 제적) 삭제<2018.1.18.>

제4절 학칙준용

제79조(학칙준용) 외국인 특별생, 시간제등록생 및 위탁생에게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학칙을 준용한다.

제16장 공개강좌

제80조(공개강좌) 우리 대학교에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응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
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81조(공개강좌의 개설)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및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마다 총장이 이를 정하여 발표한다.

제82조(수강료)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하여는 실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장 학생<개정 2011. 2.24>

제1절 학생활동<신설 2011. 2.24>

제83조(학생회 등) ① 학생은 학생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4조(조직신고)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제85조(회비) 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6조(활동 사전신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에
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 광고인쇄물의 첨부 또는 집회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4. 외부인사의 교내초청

제87조(간행물)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8조(금지활동)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은 할 수 없다.

제89조(학생지도) 학업 및 학생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분담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89조의1 삭제<1988.12.30.>

제2절 장애학생지원<신설 2011. 2.24>

제89조의2(적용범위)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사항은 우리대학교에서 수학하는 장애학생에게 적용한다.<신설 2011. 2.24>

제89조의3(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신설 2011.2.24>

제89조의4(특별지원위원회) 장애학생지원을 위한 계획 및 장애학생의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신설 2011.2.24.>

제18장 학점은행제<신설 2001.11.27.>

제90조(학위수여요건) ①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학점인정 및 학위수여 요건을 갖추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학사학위 인정을 받은 자가 우리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01.11.27., 개정 2006.2.24., 2010.10.28., 2014.6.12.>

1. 우리 대학교에서 해당 학위 전공과목 18학점 이상을 포함한 총 84학점 이상 취득한 자<개정 2010.10.28., 2014.6.12.>
2. 학사학위 소지자로 학위 취득 이후 우리 대학교에서 해당 학위 전공과목 18학점 이상을 포함한 총 48학점 이상 취득한자<개정 2010.10.28., 2014.6.12.>
3. 삭제<2010.10.28.>
4. 삭제<2010.10.28.>
- ②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에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및 부설 사회교육원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포함한다.<신설 2001.11.27, 개정 2010.10.28.>
- ③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우리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 학위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1.11.27., 개정 2010.10.28.>
- ④ 삭제<2011.1.19.>
- ⑤ 삭제<2010.10.28.>

제90조의2(교육과정·수업·학적관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등) 학점은행제의 교육과정·수업·학적관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등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5.19.>

제90조의3(유사전공 심의) 학점은행제와 관련한 유사전공 심의는 해당 대학 학부(과) 회의에서 각 학부(과) 교육과정과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간 유사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8.8.9.>

제91조(학위수여) ① 제90조의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2.2.14., 2010.10.28., 2018.1.18.>

- ② 제1항에 의하여 학위수여 가능한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1.11.27, 개정 2002.8.27., 2003.1.21., 2010.10.28., 2014.6.12., 2018.8.9.>

1. 우리 대학교 학부(과) 교육과정 중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에 한한다.
 2. 전공명이 유사한 경우 유사전공 심의를 거친다.
- ③ 학위의 종별 및 전공은 [별표 2-2]의 학위를 수여한다.<신설 2018.8.9.>

제19장 산학협력단<신설 2004.1.27.>

- 제91조의2(산학협력단) ① 우리 대학교에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둔다.<신설 2004.1.27.>
- ② 산학협력단의 설치, 조직, 재산 및 회계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04.1.27.>
- ③ 총장은 우리 대학교 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04.1.27.>

제20장 계약학과<신설 2004.2.24.>

- 제91조의3(계약학과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부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4.2.24., 개정 2011.1.19., 2015.3.27.>
- ② 계약학과의 편성 및 입학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이 경우 제3조의 입학정원과는 별도의 정원으로 하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제40조의 학위를 수여한다.<신설 2011.1.19., 개정 2015.3.27., 2018.1.18.>
- ③ 계약학과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신설 2011.1.19., 개정 2015.3.27.>

제91조의4 삭제<2011.1.19.>

제91조의5 삭제<2011.1.19.>

제91조의6 삭제<2011.1.19.>

제91조의7 삭제<2011.1.19.>

제91조의8 삭제<2011.1.19.>

제21장 기타<개정 2004.1.27., 2004.2.24.>

제92조(위원회) 우리 대학교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1.11.27.>

제93조(학칙의 개정) 우리 대학교의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내 사전공고 후, 기획위원회,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 공포한다.<개정 2001.11.27., 2007.11.14.>

제94조(자체평가) ① 우리 대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한다.<신설 2010.1.6.>

② 자체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0.1.6.>

부칙(제정: 1967.12.22.)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6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세칙) 본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학칙 시행당시의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에 재적하는 학생은 해당대학, 해당 학과, 해당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서류관장) 종전의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의 학적관계 제반장부 및 기타 학교관계 서류일체를 영남대학교에서 인수 관장한다.

부칙(1968.12.26.)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196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 학칙 시행당시의 문리과대학 가정학과의 재학생은 가정대학 가정관리 학과 해당학년에 재적케 하며, 2부대학 상학과 재학생은 졸업시까지 계속 재적케 한다.

부칙(1969.12.27.)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 학칙 시행당시의 가정대학 응용미술과의 재학생은 문리과대학 응용 미술과 해당학년에 이속 재적케 하며, 상경대학 상학과의 재학생은 졸업시까지 계속 재적케 한다.

부칙(1970.12.31.)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1. 4.17.)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 학칙 시행당시의 R.O.T.C에 입단하고 있는 장교후보생은 개정된 학칙을 적용하며, 재학생은 본 학칙의 해당학년의 교과과정을 적용한다.

부칙(1971. 8.21.)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197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1.10.21.)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197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1.12.31.)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폐과된 학과는 구 학칙에 의거, 현재학생이 졸업하는 학년도까지 존속한다.

부칙(1972.12.26.)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학칙 개정당시의 사학과 재학생은 외국사학과에 축산가공학과 재학생은 식품가공학과에 각각 재학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전동) 폐과된 학과 및 사범대학으로 편입된 학과는 현 재학생이 졸업하는 학년도까지 존속한다.

부칙(1973.12.28.)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197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5. 3. 8.)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학칙 개정당시에 문리과대학 외국사학과 재학생은 사학과에, 공과대학 조경학과 재학생은 농축산대학 조경학과에 각각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전동) 가정대학 의상학과 및 2부대학 의상학과는 현 재학생이 졸업하는 학년도까지 존속한다.

부칙(1975. 7.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75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6. 3. 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합시험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7. 3.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과 제4항, 제5조제1항, 제28조제1항제6호와 제2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2항과 제3항 및 제51조제3항은 197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당시 공과대학 응용화학과 재학생은 공업화학과에 재학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1978. 1.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78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 제36조, 제41조, 제42조는 1977학년도 상경대학입학생(제35조와 제42조는 1978학년도 입학생)과 1978학년도 문리과대학(지역사회개발학과 제외), 법정대학 및 사범대학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1979. 2.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2부대학에 관한 특별규정은 197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당시 문리과대학 지역사회개발학과 재학생은 농축산대학 지역사회개발학과에 재학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1979. 3.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11.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1980. 3. 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17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1973년 3월 17일부터 1979년 12월 31일 사이에 제적된 자는 학칙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은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1980. 8. 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0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전부칙 제2조의 규정은 이 개정 학칙 시행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1981. 5.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3조, 제25조제2항, 제36조는 198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사범대학 소속 학과로 입학한 후 개편된 미술대학 및 음악대학 소속으로 편입된 학과의 재학생은 동 재학생이(제적학생 제외) 졸업할 때까지 사범대학 소속으로 본다.

제4조(전동) 문과대학, 이과대학으로 편입된 학과는 문과대학, 이과대학에 재학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1982. 9. 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3.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1292호 83. 12. 30)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1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1984. 9. 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4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3.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5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입학 특례) 1981년 2월 28일이전에 입학한 자는 제1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조(재입학 기간) 전항에 의하여 재입학할 경우에는 제적된 날로부터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기간(단기복무에 한함)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1985. 7. 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5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 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 9. 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5호의 개정 내용은 198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1986.12.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1987. 9. 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2237호 1987. 8. 29) 부칙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를 하여 제3조제1항, 제12조, 제15조제1항 및 제8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1987. 9.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조정) 학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범대학 교육학과, 일어교육과, 한문교육과, 상업교육과, 체육교육과의 1987학년도부터 1990학년도까지의 졸업정원은 각각 40명, 40명, 40명, 50명으로 하고, 문과대학 주간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문화인류학과의 1990학년도 졸업정원은 각각 70명, 50명, 50명으로 한다.

부칙(1987.11.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7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3.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당시 공과대학 박용기계공학과 재학생은 공과대학 정밀기계공학과에, 법정대학 법학과 재학생은 법과대학에, 법정대학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재학생은 정치·행정대학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에, 농축산대학 지역사회개발학과 재학생은 정치·행정대학 지역개발학과에, 미술대학 회화과 동양화전공, 서양화전공 재학생은 동양화과, 서양화과에, 음악대학 기악과 피아노전공, 관현악전공 재학생은 피아노과, 관현악과에 각각 재학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정대학 법학과로 입학한 학생의 학과결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조(별표 2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당시 농축산대학 지역사회개발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 졸업할 경우의 학위수여 종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1988.12.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자는 제5조제2항 제4항, 제40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0학년도(의과대학은 1992학년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전동) 이 학칙 제11조제2항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0학년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전동) 비실험대학 입학자의 졸업학점은 제39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1990. 3.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6.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10.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1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사경고에 관한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2. 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12.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제2항의 개정내용은 199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과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전에 입학한 재적생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기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는 통합된 기계공학과에 재학하는 것으로 한다.

2. 공법학과, 사법학과, 동양화과, 서양화과는 1996년이전에 졸업하는 경우 공법학과, 사법학과, 동양화과, 서양화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1992학년도이전 입학자가 1993학년도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할 경우 통합된 법학과, 회화과(동양화전공, 서양화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3. 1987학년도이전에 입학한 기악과 재적생 및 1988학년도이후 1992학년도이전에 입학한 피아노과, 관현악과 재적생은 피아노과, 관현악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1993. 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3,875호 1993.4.2.) 제2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학칙 제3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조(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3,875호 1993.4.2.) 제2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재학연한) 전조에 의하여 재입학한 자 중 재입학 당시 재학년 내에 졸업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학칙 제5조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학연한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부칙(1993. 8.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6조 및 제39조 개정내용은 199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1994. 3.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6조 및 제39조의 개정내용은 199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과 및 대학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전에 입학한 임학과 재적생은 산림자원학과에, 가정대학 재적생은 생활과학대학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1995. 2.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5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5조 및 제37조의 개정내용은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33조, 제36조 및 제39조의 개정내용은 199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과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전에 입학한 약학과, 제약학과 재적생은 1997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 약학과, 제약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고, 1995학년도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 할 경우 통합된 약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1995. 6.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5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36조 및 제39조제1항의 변경내용은 199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42조의 변경내용은 1996학년도 1학기 복수전공 이수 허가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과 및 대학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전에 입학한 재적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기계공학과 재적생은 기계공학부에, 금속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재적생은 통합된 금속공학 및 재료공학부에, 법학과 재적생은 법학부에, 미술대학 및 회화과, 조소과, 응용미술과, 산업디자인과 재적생은 조형대학 및 조형학부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섬유공학과, 약학과 재적생은 1998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섬유공학과, 약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1996학년도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통합된 전기전자공학부, 섬유학부, 약학부(약학전공, 제약학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 재적생은 1997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1995학년도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통합된 화학공학 및 공업화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4. 1996학년도이후 자연과학군으로 입학한 신입생의 학과배정 인원은 1995학년도 각 학과별 입학정원으로 한다.

부칙(1996. 8. 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6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제40조제1항 “별표 2”의 학위종별은 1996학년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 전) 이 학칙 변경전에 금속공학및재료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 화학공학및공업화학부, 섬유학부 및 법학부의 전공은 1996학년도 입학자 및 1996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동 전) 이 학칙 변경전에 조형학부 소조전공, 조각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이 학칙에 의한 조소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1997. 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전에 입학한 전산공학과 재적생 및 1997학년도 입학생은 컴퓨터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동 전) 이 학칙 변경전에 입학한 경영학과 재적생 및 상업교육과 재적생은 상경대학 경영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경영학부 졸업생중 1996학년도 이전 사범대학 상업교육과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중등2급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학부제 운영으로 인한 학과통합에도 불구하고 교원자격 검정에 있어 사범대학 상업교육과 졸업생으로 본다.

부칙(1998. 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변경전 전기전자공학부에 입학한 에너지 및 산업전자전공, 정보통신 및 반도체공학전공의 재적생은 전기공학전공, 반도체 및 전파통신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② 납입금 반환에 대하여는 1997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 적용한다. 다만, 시행이전에 이미 납부한 납입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65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8. 3.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2. 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제 실시에 의한 경과조치) 이 학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개정전에 입학한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이 학칙에 의하여 입학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 사범대학 일어교육과, 체육교육과에 입학한 재적생이 이후 문과대학 동양어문학부 일어일문학전공, 생활과학대학 체육학부 체육학전공에 각각 수학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소속 및 교원자격증 취득에 관해서는 입학시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3조(학부 명칭변경에 의한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전 금속공학및재료공학부, 화학공학및공업화학부에 입학한 재적생은 개정된 재료금속공학부에 응용화학공학부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학부내 전공통합에 의한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전 전기전자공학부에 입학한 전기공학전공 재적생은 전기공학전공에, 반도체및전파통신전공 재적생은 개정된 전자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시스템및제어공학전공 재적생은 희망에 의하여 전기공학전공 또는 전자공학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1999. 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0.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2.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문과대학 동양어문학부와 인문사회학부로 입학한 재적생은 전공배정 결과에 따라 개정된 문과대학 한국학부, 동양어문학부, 인문학부 및 사회과학부에, 이과대학 의예과 재적생은 의과대학 의예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공과대학 응용화학공학부 재적생중 2000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응용화학공학부내 화학공학전공과 공업화학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1998학년도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경우에는 통합된 응용화학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재적생중 2002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전기전자공학부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0학년도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전자정보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0. 8.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2. 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1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1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15조, 제33조, 제36조, 제39조, 제42조, 제90조제1항제4호 및 동항의 단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제40조는 2002학년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부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① 사회과학부 매체정보학전공과 자연과학부 물리학전공 재적생은 개편된 사회과학부 언론정보학전공과 자연과학부 광전자물리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② 법학부 재적생은 2004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법학부 및 공법전공, 사법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2학년도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경우에는 개편된 법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③ 공과대학 섬유패션학부 및 동학부 섬유생산공정전공과 섬유소재가공전공 재적생은 개편된 섬유패션학부 및 동학부 섬유생산공정전공과 섬유소재가공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공과대학 섬유패션학부 패션디자인전공과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재적생은 개편된 섬유패션학부 의류패션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1학년 재적생중 의류패션전공 희망자는 전공배정결과에 따라 개편된 섬유패션학부 의류패션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④ 통상및경제학부 재적생중 경제학전공과 국제통상전공 재적생은 개편된 경제금융학부 경제금융전공과 국제통상학부 국제통상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재적생은 개편된 금융통상학부군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⑤ 체육학부 재적생은 2002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체육학부 체육학전공과 생활체육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2000학년도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수학 또는 복학하는 경우에는 개편된 체육학부 체육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⑥ 조형학부 재적생은 2003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조형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

다. 단, 조형학부 재적생이 2001학년도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수학 또는 복학하는 경우에는 소속전공에 따라 개편된 미술학부와 디자인학부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하며, 산업디자인전공과 형성디자인전공 재적생은 전공 재배정 결과에 따라 개편된 산업디자인전공과 공예디자인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02. 2.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3.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7.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2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8.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40조제1항의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입학한 전자정보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재적생은 2005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공학부 전자공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3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경우에는 개편된 전자정보공학부 전자전파공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03. 6.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는 2003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의학과 편입학생의 재학연한 및 휴학기간에 관한 특례) 의학과 편입학생의 의예과 선수과목 이수에 필요한 학기는 제5조의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의학과 편입학생이 의예과 선수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휴학한 기간은 제22조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2003.12. 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3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전에 입학한 재적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야간강좌개설부의 수학통계학부생은 이과대학 수학통계학부 통계학전공(주간)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상경대학 금융통상학부군의 재적생은 전공배정에 따라 경제금융학부와 국제통상학부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3. 생물자원학부 생물자원경영학전공 재적생은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생물자원학부 생물자원경영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4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경우에는 생물자원학부 식품산업경영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4. 생활과학부 가정관리학 전공 재적생은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생활과학부 가정관리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4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경우에는 생활과학부 가족주거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04. 1.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6.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입학한 재적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한국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국사학전공, 문화인류학전공 재적생은 국어국문학과, 국사학과 및 문화인류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동양어문학부 중어중문학전공, 일어일문학전공 재적생은 중어중문학과와 일어일문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3. 서양어문학부 불어불문학전공, 독어독문학전공 재적생은 불어불문학과와 독어독문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4. 인문학부 철학전공, 사학전공 재적생은 철학과와 사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5. 사회과학부 심리학전공, 사회학전공, 언론정보학전공 재적생은 심리학과, 사회학과 및 언론정보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6. 수학통계학부 수학전공, 통계학전공 재적생은 수학과와 통계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7. 자연과학부 광전자물리전공, 화학전공, 생물학전공, 생화학전공 재적생은 광전자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및 생화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8. 토목도시환경공학부 토목공학전공, 도시공학전공, 환경공학전공 재적생은 건설환경공학부 토목공학전공, 도시공학전공, 환경공학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9. 야간강좌개설부 기계공학전공 재적생은 공과대학 기계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

다.

10. 재료금속공학부 재적생은 신소재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11. 전자정보공학부 전기공학전공 재적생은 전기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전자정보공학부 전자전파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재적생은 개편된 전자정보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및 정보통신공학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하며,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경우에는 전공배정결과에 따라 전기공학과 및 개편된 전자정보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12. 야간강좌개설부 전자정보공학부 재적생은 2007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야간강좌개설부 전자정보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경우에는 공과대학 전자정보공학부 전자공학전공(주간)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13. 응용화학공학부 응용화학공학전공 재적생은 2007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응용화학공학부 응용화학공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경우에는 디스플레이화학공학부 디스플레이화학공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14. 정행학부 정치외교학전공 재적생은 정치외교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정행학부 행정학전공, 지역개발학전공 재적생은 개편된 행정학부 행정학전공과 지역개발학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하며,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경우에는 전공배정결과에 따라 정치외교학과 및 개편된 행정학부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15. 생물자원학부 식품산업경영학전공 재적생은 식품산업경영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16. 생물산업공학부 응용미생물학전공 재적생은 응용미생물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생물산업공학부 식품가공학전공, 외식산업학전공 재적생은 개편된 식품외식학부 식품가공학전공과 외식산업학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하며,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경우에는 전공배정결과에 따라 응용미생물학과 및 개편된 식품외식학부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17. 디자인학부 공예디자인전공 재적생은 디자인학부 생활제품디자인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05. 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는 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2조(등록금반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65조는 2004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 2.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7.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 3제2항은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에게 적용한다.

부칙(2005.10.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제1항 전자정보공학부의 개편, 제3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중어중문학과 재적생은 2008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중어중문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경우에는 중국언어문화학부 중어중문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광전자물리학과 재적생은 물리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3. 건설환경공학부 도시공학전공 재적생은 개편된 도시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건설환경공학부 재적생은 전공배정 결과에 따라 개편된 건설환경공학부 및 도시공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4. 야간강좌개설부 건설환경공학부 재적생은 2008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야간강좌개설부 건설환경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경우에는 전공배정 결과에 따라 개편된 건설환경공학부 및 도시공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5. 200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전자정보공학부 재적생은 전공배정 결과에 따라 전기공학과 및 개편된 전자정보공학부(독립학부)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2005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전자정보공학부 재적생은 개편된 전자정보공학부(독립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6. 야간강좌개설부 법학부 재적생은 법과대학 법학부(주간)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7. 행정학부 지역개발학전공 재적생은 2008학년도 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행정학부 지역개발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경우에는 전공배정 결과에 따라 개편된 행정학부 지역및복지행정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8. 섬유패션학부 섬유생산공정전공, 섬유소재가공전공 재적생은 2008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섬유패션학부 섬유생산공정전공, 섬유소재가공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경우에는 전공배정 결과에 따라 개편된 섬유패션학부 섬유신소재설계전공, 섬유나노소재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05.12. 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 조항은 아래와 같이 시행일을 달리 정한다.

1. 제18조제1항, 제35조의2, 제40조제1항 및 제91조의4제1항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42조의3 제2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기계공학프로그램, 디스플레이화학공학프로그램, 건축공학프로그램은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06. 9.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 조항은 아래와 같이 시행일을 달리정한다.

1.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40조제1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자연자원학부 및 식품외식학부 식품가공학전공의 학위종별은 2006학년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문과대학 중국언어문화학부 재적생은 개편된 중국언어문화학부(독립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7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경우에는 전공배정결과에 따라 개편된 중국언어문화학부 중어중문학전공 및 중국문화정보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영어영문학과(주간 및 야간) 재적생은 2009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영어영문학과(주간 및 야간)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7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경우에는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7.1.15>
3. 야간강좌개설부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재적생, 야간강좌개설부 건축공학과 재적생은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주간) 및 건축공학과(주간)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4. 자연자원학부 원예학전공, 조경학전공, 산림자원학전공 재적생은 원예학과, 조경학과, 산림자원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5. 야간강좌개설부 가족주거학전공 재적생은 2009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야간강좌개설부 가족주거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7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경우에는 가족주거학과(주간)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6. 생활과학부 가족주거학전공(주간), 식품영양학전공재적생은 가족주거학과 및 식품영양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2007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생활과학부 재적생은 전공배정결과에 따라 가족주거학과 및 식품영양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의과대학 유급제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유급으로 제적된 의과대학 학생에 대하여는 이 학칙 제12조제3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2006.10.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2.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4.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7.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 재적생은 개편된 건축학부(독립학부) 건축학전공과 건축공학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공과대학 건축학부 전공 미 배정자는 전공배정결과에 따라 건축학부(독립학부) 건축학전공 및 건축공학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재적생은 전공 재배정결과에 따라 개편된 건축학부(독립학부) 건축학전공 및 건축공학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단, 2007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공과대학 건축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3. 기계공학부 기계공학전공 재적생은 전공 재배정결과에 따라 기계공학부 기계시스템전공, 기계설계전공, 첨단기계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단, 2007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기계공학부 기계공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4. 행정학부 행정학전공, 지역및복지행정학전공 재적생은 행정학과와 지역및복지행정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07. 9.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 학칙은 2007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 및 제58조제2항의 개정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2.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4.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과 제58조제2항의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9.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건설환경공학부 토목공학전공, 환경공학전공 재적생은 건설시스템공학과와 환경공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2008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건설환경공학부 토목공학전공, 환경공학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신소재공학부 금속공학전공, 세라믹반도체재료전공 재적생은 신소재공학부 신소재공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2008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신소재공학부 금속공학전공, 세라믹반도체재료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3. 식품외식학부 재적생은 식품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식품외식학부 식품가공학전공 재적생은 식품학부 식품공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4. 미술학부 동양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재적생은 미술학부 한국회화전공, 회화전공, 입체미술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08.11.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3.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7.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 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재적생은 영어영문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며, 영어영문학부 영어번역전공 재적생은 영어영문학부 영어번역전공에 재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 희망에 따라 영어영문학과로 전공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2. 전자정보공학부(독립학부) 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재적생은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10.10.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생물학과 재적생은 생명과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디스플레이화학공학부 디스플레이화학공학전공 재적생은 2013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디스플레이화학공학부 디스플레이화학공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경우에는 화학공학부 화학공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1.7.14>
3. 원예학과 재적생은 원예생명과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4. 조형대학 재적생은 디자인미술대학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5.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생활제품디자인전공 재적생은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산업인터랙션디자인학과, 생활제품디자인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디자인학부 재적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산업인터랙션디자인학과, 생활제품디자인학과로 배정한다.
6. 천마인재학부 재적생은 전공배정 결과에 따라 개편된 천마인재학부 정책과학전공과 의생명과학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11. 1.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의 개정 학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제40조 제1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 학칙 개정 이후 식품산업경영 학과를 졸업하는 학생에게는 경영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부칙(2011. 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7.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에 따른 반환사유 발생시에 반환금액 적용은 학칙개정 후 처음으로 해당 사유로 제작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0. 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 제36조 및

제39조의 개정 규정상의 학점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섬유패션학부 각 전공 재적생 중 2014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재적생은 변경전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2014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재적생과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 학년에 복학하는 재적생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변경된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섬유신소재설계전공 재적생은 공과대학 융합섬유공학과
 - 나. 섬유나노소재전공 재적생은 공과대학 나노메디컬유기재료공학과
 - 다. 의류패션전공 재적생은 생활과학대학 의류패션학과
2. 중국언어문화학부 각 전공 재적생 중 2014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재적생은 변경전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2014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재적생과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 학년에 복학하는 재적생 및 전공 배정 전에 휴학한 재적생이 2012학년도 이후에 복학하여 전공 배정을 받는 재적생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변경된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중국어중문학전공, 중국문화정보전공 재적생은 문과대학 중국언어문화학부 중국어중문 전공
 - 나. 중국어통번역전공 재적생은 문과대학 중국언어문화학부 중국어통번역전공
3. 기초교육대학 천마인재학부 의생명과학전공 재적생은 졸업까지 변경전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12.11.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 조항은 아래와 같이 시행일을 달리 정한다.

1.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55조제1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체육학부 체육학전공 재적생은 체육학부 체육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 희망에 따라 무용학전공으로 전공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2. 자율전공학부 인문·사회계열 재적생은 인문자율전공학부, 자율전공학부 자연계열 재적생은 자연자율전공학부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법과대학 존속기간 등) ① 법과대학은 2018년 2월 28일까지 유지한다.

- ② 법학부의 졸업학점 축소로 인한 졸업유예는 2012학년도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승인하되, 2014년 2월까지 졸업하여야 한다.
- ③ 법학부 재적생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13. 1.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7. 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 전부터 적용되고 있는 제1조의2부터 제1의4까지의 규정은 이 개정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4. 2. 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 학칙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기초교육대학 군사학과로 입학한 재적생은 정치행정대학 군사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14. 2.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6.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조항은 아래와 같이 시행일을 달리 정한다.

1. 제2조 제1항은 2014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제90조는 2014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 9.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중국언어문화학부 중어중문전공, 중국어통번역전공, 국사학과, 사학과, 화학과, 정보통신공학과, 화학공학부 화학공학전공, 나노메디컬유기재료공학과, 조경학과, 산림자원학과, 미술학부 한국회화전공, 회화전공, 입체미술전공, 음악학부 작곡전공, 피아노전공, 관현악전공, 국악전공, 생명공학부 분자생명과학전공 재적생 중 2018년 8월까지 졸업하는 재적생은 변경전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2018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재적생과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재적생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변경된 학과 또는 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전공배정을 받지 못한 재적생은 추후 전공배정 결과에 따른 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8.8.9.>

- 가. 중국언어문화학부 중어중문전공, 중국통번역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중국언어문화학과
- 나. 국사학과, 사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역사학과
- 다. 화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화학생화학부 화학전공
- 라. 정보통신공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모바일정보통신공학과
- 마. 화학공학부 화학공학전공 재적생은 전공 재배정 결과에 따라 변경된 화공시스템전공 또는 IT·에너지화공전공
- 바. 나노메디컬유기재료공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화학공학부 고분자·바이오소재전공

사. 삭제<2018.8.9.>

아. 조경학과, 산림자원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산림자원및조경학과

자. 미술학부 한국회화전공, 회화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회화전공

차. 미술학부 입체미술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트랜스아트전공

카. 음악학부 작곡전공, 국악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음악과

타. 음악학부 관현악전공, 피아노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기악과

파. 생명공학부 분자생명과학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이과대학 화학생화학부 생화학전
공

2. 상경대학 경영학부 재적생은 변경된 경영대학 경영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2015년 8월까지 졸업하는 재적생은 변경 전 상경대학 경영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3. 식품학부 식품공학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식품공학과에, 외식산업학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외식산업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4.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모바일영상디자인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시각디자인학과에, 산업인터넷디자인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산업디자인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5. 음악학부 성악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성악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6. 지역및복지행정학과 재적생 중 2024년 2월까지 졸업하는 재적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지역및복지행정학과 또는 새마을국제개발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2024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재적생은 새마을국제개발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18.8.9.>

부칙(2014.12.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8조는 201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2.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이전에 학사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제43조제2항에 따라 졸업 및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부칙(2015. 3.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9.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자연자원대학 각 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생명응용과학대학 각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2016년 8월까지 졸업하는 재적생은 변경전 자연자원대학 각 학과에 재적

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연자원대학 식품자원경제학과, 외식산업학과 재적생은 생명응용과학대학 식품자원 경제학과, 외식산업학과로 재적하되 2022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재적생은 변경된 식품경제외식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3. 모바일정보통신공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정보통신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이에 따라 2014. 9.26. 개정 학칙의 부칙 제2조제1호 정보통신공학과 재적생에 대한 경과조치는 이 개정 학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4.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생명공학부 미생물생명공학전공, 생명공학전공 재적생 중 2022년 8월까지 졸업하는 재적생은 변경전 학과 또는 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2022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재적생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변경된 학과 또는 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전공배정을 받지 못한 생명공학부 재적생은 전공 배정 결과에 따라 각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가. 불어불문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유럽언어문화학부 프랑스어문전공
 - 나. 독어독문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유럽언어문화학부 독일언어문화전공
 - 다. 생명공학부 미생물생명공학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생명응용과학대학 생명공학과
 - 라. 생명공학부 생명공학전공 재적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된 생명응용과학대학 생명공학과 또는 의생명공학과

부칙(2016. 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5.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조항은 아래와 같이 시행일을 달리 정한다.

1. 제4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0조제1항의 [별표 2-1]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90조의2는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이과대학 각 학부(과) 재적생은 변경된 자연과학대학 각 학부(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2017년 8월까지 졸업하는 재적생은 변경 전 이과대학 각 학부(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전기공학과(주간, 야간),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각 학부(과) 재적생은 변경된 기계IT대학 각 학부(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2017년 8월까지 졸업하는 재적생은 변경 전 공과대학 각 학부(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3.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IT·에너지화공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화학공학부 융합화학공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4. 공과대학 융합섬유공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파이버시스템공학과로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2017년 8월까지 졸업하는 재적생은 변경 전 융합섬유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5. 상경대학 국제통상학부 국제통상전공(주간, 야간) 재적생 중 2020년 8월까지 졸업하

는 재적생은 변경 전 국제통상학부 국제통상전공(주간, 야간)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2020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재적생은 변경된 무역학부 무역학전공(주간, 야간)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6. 기초교육대학 자연자율전공학부 재적생 중 2017년 2월까지 전공배정을 받지 못하는 재적생은 자율전공학부 전공(학과) 배정에 관한 내규에 따라 입학 당시 전공배정이 가능한 학부(과)로 소속하도록 한다. 다만, 자율전공학부 전공(학과) 배정에 관한 내규 제4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17. 4.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7.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조항은 아래와 같이 시행일을 달리 정한다.

1. 제4조의3제1항제1호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58조제2항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8. 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 우리 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학습자는 2017학년도 1학기까지 우리 대학교 학점은행제 총장명의 학사학위 취득과정에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총장명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별표 1]

대학의 학부(과) 편성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

2019학년도

(단위 : 명)

대학	모 집 단 위	정원	개설전공(학과)	비고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88 (36)	<주간>국어국문학과 <야간>국어국문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	60	중국언어문화학과	
	일어일문학과	33	일어일문학과	
	영어영문학과	82	영어영문학과	
	유럽언어문화학부	66	프랑스어문 독일언어문화	
	철학과	32	철학과	
	역사학과	60	역사학과	
	문화인류학과	32	문화인류학과	
	심리학과	34	심리학과	
	사회학과	33	사회학과	
	언론정보학과	34	언론정보학과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43	수학과	
	통계학과	49	통계학과	
	물리학과	36	물리학과	
	화학생화학부	90	화학, 생화학	
	생명과학과	33	생명과학과	
공과대학	건설시스템공학과	73	건설시스템공학과	
	환경공학과	54	환경공학과	
	도시공학과	37	도시공학과	
	신소재공학부	125	신소재공학	
	화학공학부	245	고분자·바이오소재, 화공시스템, 융합화학공학, 에너지화공	
	파이버시스템공학과	47	파이버시스템공학과	
기계IT대학	기계공학부	270	기계시스템, 기계설계, 첨단기계	
	전기공학과	105 (30)	<주간>전기공학과 <야간>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125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100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100	정보통신공학과	
	자동차기계공학과	90	자동차기계공학과	
	로봇기계공학과	60	로봇기계공학과	
정치행정대학	정치외교학과	85 (45)	<주간>정치외교학과 <야간>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91 (36)	<주간>행정학과 <야간>행정학과	
	새마을국제개발학과	75 (35)	<주간>새마을국제개발학과 <야간>새마을국제개발학과	
	경찰행정학과	40	경찰행정학과	
	군사학과	40	군사학과	

대학	모집단위	정원	개설전공(학과)	비고
상경대학	경제금융학부	155 (40)	<주간>경제금융 <야간>경제금융	
	무역학부	145 (40)	<주간>무역학 <야간>무역학	
경영대학	경영학과	159 (30)	<주간> 경영학과 <야간> 경영학과	
	회계세무학과	60	회계세무학과	
의과대학	의예과 [의학과]	76 [76]	의예과 [의학과]	
약학대학	약학부	35	약학	
		35	제약학	
생명응용과학대학	식품경제외식학과	55	식품경제외식학과	
	원예생명과학과	33	원예생명과학과	
	산림자원및조경학과	66	산림자원및조경학과	
	식품공학과	47	식품공학과	
	생명공학과	71	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35	의생명공학과	
생활과학대학	가족주거학과	58	가족주거학과	
	식품영양학과	51	식품영양학과	
	체육학부	90	체육학, 무용학	
	의류패션학과	53	의류패션학과	
사범대학	교육학과	30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30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한문교육과	30	한문교육과	
	수학교육과	30	수학교육과	
	유아교육과	30	유아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30	특수체육교육과	
디자인미술대학	미술학부	80	회화, 트랜스아트	
	시각디자인학과	60	시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38	산업디자인학과	
	생활제품디자인학과	38	생활제품디자인학과	
음악대학	음악과	50	음악과	
	성악과	32	성악과	
	기악과	66	기악과	
기초교육대학	천마인재학부	30	정책과학	
	인문자율전공학부	90	인문·사회계열, 항공운항계열	
건축학부		127	건축학, 건축디자인, 건축공학	
국제학부				
· 14 학부 · 54 학과 · 모집단위: 68(8)		4,622 (292)	14 학부(24 전공), 54 학과	

* ()는 야간정원으로 괄호 밖의 정원에 포함됨.

* []안의 수는 의학과 정원으로서 []밖의 입학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함.

대학의 학부(과) 편성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

2018학년도

(단위 : 명)

대학	모집단위	정원	개설전공(학과)	비고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88 (36)	<주간>국어국문학과 <야간>국어국문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	60	중국언어문화학과	
	일어일문학과	33	일어일문학과	
	영어영문학과	82	영어영문학과	
	유럽언어문화학부	66	프랑스어문 독일언어문화	
	철학과	32	철학과	
	역사학과	60	역사학과	
	문화인류학과	32	문화인류학과	
	심리학과	34	심리학과	
	사회학과	33	사회학과	
	언론정보학과	34	언론정보학과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43	수학과	
	통계학과	49	통계학과	
	물리학과	36	물리학과	
	화학생화학부	90	화학, 생화학	
	생명과학과	33	생명과학과	
공과대학	건설시스템공학과	73	건설시스템공학과	
	환경공학과	54	환경공학과	
	도시공학과	37	도시공학과	
	신소재공학부	125	신소재공학	
	화학공학부	245	고분자·바이오소재, 화공시스템, 융합화학공학, 에너지화공	
	파이버시스템공학과	47	파이버시스템공학과	
기계IT대학	기계공학부	270	기계시스템, 기계설계, 첨단기계	
	전기공학과	105 (30)	<주간>전기공학과 <야간>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125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100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100	정보통신공학과	
	자동차기계공학과	90	자동차기계공학과	
	로봇기계공학과	60	로봇기계공학과	
정치행정대학	정치외교학과	85 (45)	<주간>정치외교학과 <야간>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91 (36)	<주간>행정학과 <야간>행정학과	
	새마을국제개발학과	75 (35)	<주간>새마을국제개발학과 <야간>새마을국제개발학과	
	경찰행정학과	40	경찰행정학과	
	군사학과	40	군사학과	

대학	모집단위	정원	개설전공(학과)	비고
상경대학	경제금융학부	155 (40)	<주간>경제금융 <야간>경제금융	
	무역학부	145 (40)	<주간>무역학 <야간>무역학	
경영대학	경영학과	159 (30)	<주간> 경영학과 <야간> 경영학과	
	회계세무학과	60	회계세무학과	
의과대학	의예과 [의학과]	76 [76]	의예과 [의학과]	
약학대학	약학부	35	약학	
		35	제약학	
생명응용과학대학	식품경제외식학과	55	식품경제외식학과	
	원예생명과학과	33	원예생명과학과	
	산림자원및조경학과	66	산림자원및조경학과	
	식품공학과	47	식품공학과	
	생명공학과	71	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35	의생명공학과	
생활과학대학	가족주거학과	58	가족주거학과	
	식품영양학과	51	식품영양학과	
	체육학부	90	체육학, 무용학	
	의류패션학과	53	의류패션학과	
사범대학	교육학과	30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30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한문교육과	30	한문교육과	
	수학교육과	30	수학교육과	
	유아교육과	30	유아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30	특수체육교육과	
디자인미술대학	미술학부	회화 트랜스아트	회화	
			트랜스아트	
	시각디자인학과	60	시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38	산업디자인학과	
	생활제품디자인학과	38	생활제품디자인학과	
음악대학	음악과	50	음악과	
	성악과	32	성악과	
	기악과	66	기악과	
기초교육대학	천마인재학부	30	정책과학	
	인문자율전공학부	90	인문·사회계열, 항공운항계열	
건축학부		127	건축학, 건축디자인, 건축공학	
국제학부				
· 14 학부 · 54 학과 · 모집단위: 68(8)		4,622 (292)	14 학부(24 전공), 54 학과	

* ()는 야간정원으로 괄호 밖의 정원에 포함됨.

* []안의 수는 의학과 정원으로서 []밖의 입학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함.

대학의 학부(과) 편성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

2017학년도

(단위 : 명)

대학	모 집 단 위	정원	개설전공(학과)	비고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88 (36)	<주간>국어국문학과 <야간>국어국문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	60	중국언어문화학과	
	일어일문학과	33	일어일문학과	
	영어영문학과	82	영어영문학과	
	유럽언어문화학부	66	프랑스어문 독일언어문화	
	철학과	32	철학과	
	역사학과	60	역사학과	
	문화인류학과	32	문화인류학과	
	심리학과	34	심리학과	
	사회학과	33	사회학과	
	언론정보학과	34	언론정보학과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43	수학과	
	통계학과	49	통계학과	
	물리학과	36	물리학과	
	화학생화학부	90	화학, 생화학	
	생명과학과	33	생명과학과	
공과대학	건설시스템공학과	73	건설시스템공학과	
	환경공학과	54	환경공학과	
	도시공학과	37	도시공학과	
	신소재공학부	125	신소재공학	
	화학공학부	245	고분자·바이오소재, 화공시스템, 융합화학공학, 에너지화공	
	파이버시스템공학과	47	파이버시스템공학과	
기계IT대학	기계공학부	270	기계시스템, 기계설계, 첨단기계	
	전기공학과	105 (30)	<주간>전기공학과 <야간>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125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100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100	정보통신공학과	
	자동차기계공학과	90	자동차기계공학과	
	로봇기계공학과	60	로봇기계공학과	
정치행정대학	정치외교학과	85 (45)	<주간>정치외교학과 <야간>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91 (36)	<주간>행정학과 <야간>행정학과	
	새마을국제개발학과	75 (35)	<주간>새마을국제개발학과 <야간>새마을국제개발학과	
	경찰행정학과	40	경찰행정학과	
	군사학과	40	군사학과	

대학	모집단위	정원	개설전공(학과)	비고
상경대학	경제금융학부	155 (40)	<주간>경제금융 <야간>경제금융	
	무역학부	145 (40)	<주간>무역학 <야간>무역학	
경영대학	경영학과	159 (30)	<주간> 경영학과 <야간> 경영학과	
	회계세무학과	60	회계세무학과	
의과대학	의예과 [의학과]	76 [76]	의예과 [의학과]	
약학대학	약학부	35	약학	
		35	제약학	
생명융성용과학대학	식품경제외식학과	55	식품경제외식학과	
	원예생명과학과	33	원예생명과학과	
	산림자원및조경학과	66	산림자원및조경학과	
	식품공학과	47	식품공학과	
	생명공학과	71	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35	의생명공학과	
생활과학대학	가족주거학과	58	가족주거학과	
	식품영양학과	51	식품영양학과	
	체육학부	90	체육학, 무용학	
	의류패션학과	53	의류패션학과	
사범대학	교육학과	30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30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한문교육과	30	한문교육과	
	수학교육과	30	수학교육과	
	유아교육과	30	유아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30	특수체육교육과	
디자인미술대학	미술학부	회화 트랜스아트	회화	
			트랜스아트	
	시각디자인학과	60	시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38	산업디자인학과	
	생활제품디자인학과	38	생활제품디자인학과	
음악대학	음악과	50	음악과	
	성악과	32	성악과	
	기악과	66	기악과	
기초교육대학	천마인재학부	30	정책과학	
	인문자율전공학부	90	인문·사회계열, 항공운항계열	
건축학부		127	건축학, 건축디자인, 건축공학	
국제학부				
· 14 학부 · 54 학과 · 모집단위: 69(8)		4,622 (292)	14 학부(24 전공), 54 학과	

* ()는 야간정원으로 괄호 밖의 정원에 포함됨.

* []안의 수는 의학과 정원으로서 []밖의 입학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함.

대학의 학부(과) 편성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

2016학년도

(단위 : 명)

대학	모 집 단 위	정원	개설전공(학과)	비고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88 (36)	<주간>국어국문학과 <야간>국어국문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	60	중국언어문화학과	
	일어일문학과	35	일어일문학과	
	영어영문학과	90	영어영문학과	
	유럽언어문화학부	66	프랑스어문 독일언어문화	
	철학과	35	철학과	
	역사학과	60	역사학과	
	문화인류학과	35	문화인류학과	
	심리학과	35	심리학과	
	사회학과	35	사회학과	
이과대학	언론정보학과	35	언론정보학과	
	수학과	53	수학과	
	통계학과	52	통계학과	
	물리학과	36	물리학과	
	화학생화학부	90	화학, 생화학	
공과대학	생명과학과	35	생명과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80	건설시스템공학과	
	환경공학과	60	환경공학과	
	도시공학과	45	도시공학과	
	기계공학부	263	기계시스템, 기계설계, 첨단기계	
	신소재공학부	100	신소재공학	
	전기공학과	90 (30)	<주간>전기공학과 <야간>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100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85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85	정보통신공학과	
정치행정대학	화학공학부	180	고분자·바이오소재	
			화공시스템 IT·에너지화공	
	융합섬유공학과	50	융합섬유공학과	
	정치외교학과	89 (45)	<주간>정치외교학과 <야간>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94 (36)	<주간>행정학과 <야간>행정학과	
경찰행정대학	새마을국제개발학과	75 (35)	<주간>새마을국제개발학과 <야간>새마을국제개발학과	
	경찰행정학과	40	경찰행정학과	
	군사학과	40	군사학과	

대학	모집단위	정원	개설전공(학과)	비고
상경대학	경제금융학부	165 (40)	<주간> 경제금융 <야간> 경제금융	
	국제통상학부	166 (40)	<주간> 국제통상 <야간> 국제통상	
경영대학	경영학과	170 (30)	<주간> 경영학과 <야간> 경영학과	
	회계세무학과	60	회계세무학과	
의과대학	의예과 [의학과]	76 [53]	의예과 [의학과]	
약학대학	약학부	35	약학	
		35	제약학	
생명응용과학대학	식품경제외식학과	55	식품경제외식학과	
	원예생명과학과	35	원예생명과학과	
	산림자원및조경학과	66	산림자원및조경학과	
	식품공학과	48	식품공학과	
	생명공학과	72	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35	의생명공학과	
생활과학대학	가족주거학과	67	가족주거학과	
	식품영양학과	54	식품영양학과	
	체육학부	95	체육학, 무용학	
	의류패션학과	58	의류패션학과	
사범대학	교육학과	30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30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한문교육과	30	한문교육과	
	수학교육과	30	수학교육과	
	유아교육과	30	유아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30	특수체육교육과	
디자인미술대학	미술학부	회화 트랜스아트	회화	
			트랜스아트	
	시각디자인학과	60	시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40	산업디자인학과	
	생활제품디자인학과	40	생활제품디자인학과	
음악대학	음악과	50	음악과	
	성악과	35	성악과	
	기악과	66	기악과	
기초교육대학	천마인재학부	30	정책과학	
	인문자율전공학부	180	인문·사회계열, 항공운항계열	
	자연자율전공학부	128	자연계열	
건축학부		135	건축학, 건축디자인, 건축공학	
국제학부				
· 15 학부 · 52 학과 · 모집단위: 68(8)		4,672 (292)	15 학부(23 전공), 52 학과	

* ()는 야간정원으로 괄호 밖의 정원에 포함됨.

* []안의 수는 의학과 정원으로서 []밖의 입학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함.

[별표 1-1]

계약학과의 학과 편성 및 입학정원표

모집단위	운영학부(과)	정원	비 고
약학과	약학부	8	

[별표 2]

학위종별·해당학부(전공)·학과

학위종별	해당학부(전공)·학과
문학사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과, 중국언어문화학부, 중국언어문화학과, 일어일문학과, 일어일문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과, 유럽언어문화학부,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철학과, 국사학과, 사학과, 역사학과, 문화인류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언론정보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한문교육과
이학사	수학과, 통계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생화학과, 화학생화학부, 산림자원학과, 산림자원및조경학과, 식품학부, 식품공학과, 외식산업학과, 응용미생물학과, 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수학교육과, 섬유패션학부(의류패션전공), 생명공학부, 천마인재학부(의생명과학전공), 의류패션학과
공학사	건설시스템공학과, 환경공학과, 도시공학과,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건축디자인전공), 기계공학부, 신소재공학부,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자동차기계공학과, 로봇기계공학과, 화학공학부, 섬유패션학부(섬유신소재설계전공, 섬유나노소재전공), 융합섬유공학과, 파이버시스템공학과, 나노메디컬유기재료공학과
건축학사	건축학부(건축학전공)
정치학사	정치외교학과
행정학사	행정학과, 지역및복지행정학과,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경찰행정학사	경찰행정학과
군사학사	군사학과
경제학사	경제금융학부, 경제학과, 식품자원경제학과, 식품경제외식학과
경영학사	경영학부, 경영학과, 회계세무학과
상학사	국제통상학부
무역학사	무역학부
의학사	의학과
약학사	약학부
원예학사	원예생명과학과
조경학사	조경학과
생활과학사	가족주거학과
교육학사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체육학사	체육학부(체육학전공), 특수체육교육과
무용학사	체육학부(무용학전공)
미술학사	미술학부
디자인학사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산업인터넷디자인학과, 생활제품디자인학과, 모바일영상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음악학사	음악학부, 음악과, 성악과, 기악과
정책학사	천마인재학부(정책과학전공)

[별표 2-1]

연계(연합)전공·학위종별

학위종별	해당전공
문학사	문화유산해설전공, 통합사회교육전공, 도덕윤리교육전공
이학사	통합과학교육전공, 기술가정교육전공
공학사	그린에너지전공, 원자력공학전공, IT·에너지융합전공, 자동차융합부품특성화전공, 기계IT융합전공
부동산학사	부동산학전공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전공
국제경제학사	글로벌차이나전공
국제학사	국제학전공
디자인학사	자동차디자인전공
유럽학사	유럽학전공
그린카학사	그린카전공
국제개발및새마을학사	국제개발및새마을학전공
다문화학사	다문화전공
금융학사	금융보험전공
기술혁신·기업가정신학사	기술혁신·기업가정신전공
미술보존복원학사	미술보존복원전공

[별표 2-2]

학점은행제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종별·해당 전공

학위종별	해당전공
문학사	국어국문학전공, 일어일문학전공, 영어영문학전공, 철학전공, 사학전공, 심리학전공
이학사	수학전공, 생명과학전공
공학사	환경공학전공,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행정학사	행정학전공
경영학사	경영학전공
무역학사	무역학전공
체육학사	체육학전공
무용학사	무용학전공
디자인학사	시각디자인전공
음악학사	음악학전공, 성악전공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0000년00월00일생

000대학000학부(과)(000)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학사의 자격을 인정함.

전 공 000 (000 학사)

000 (000 학사)

000 (000 학사)

부전공 000

년 월 일

대학(학부)장 (학위) (인)

대학(학부)장 (학위) (인)

위 인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영남대학교 총장 (학위) (인)

학위번호 : 영남대0000(학)0000

* 학부장은 독립학부장(천마인재학부장 포함)을 말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년○○월○○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 학부(과·전공) 제 학년을 수료

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대학장 (학위) (인)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영남대학교 총장 (학위) (인)

(별지 제3호 서식)

학점 제 호

학위기

성명 :

○○○○년○○월○○일생

위 사람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영남대학교 총장 (학위) ○ ○ ○ (인)

학위번호 : 영남대-학점-(연도)○○○○-(일련번호)○○○